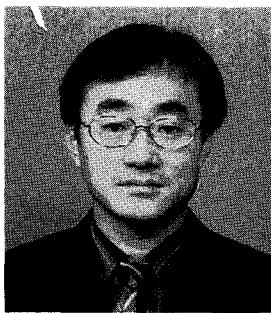


유기용제 중독

유기용제의 업무상재해 인정과 산재보상



근로복지공단 요양부
이 길 수 차장

1. 유기용제 중독

유기용제의 중독은 호흡기와 피부를 통한 흡수에 의해 발생되며 특별한 확진방법이 없으나 신경학적검사, 심리검사, 뇌파검사 등이 진단에 도움을 주고 있다.

급성중독으로는 음주

시에 나타나는 증상과 유사하며 두통·구토·어지럼증·평형 및 방향감각의 상실·발음이 어려워지고 심한 경우 의식의 소실과 함께 호흡억제로 사망할 수 있고, 성격의 변화·치매·다양한 정신증상을 동반하며 반복 노출될 경우 소뇌 위축 등 중추신경계의 손상을 가져오는 만성중독 증상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나라 산업현장에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유기용제의 종류로는 CS_2 , 트리클로로에틸렌, 지방족, 방향족 등이 있다.

산업현장에서 유기용제에 의한 중독을 방지하고 자 건강관리 기준을 만들어 예방을 기하고 있으나 만부득이 이에 이환되는 경우에는 그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요양을 하게 하고 요양기간 중 생활급인

휴업급여는 물론 후유증에 대하여는 그 정도에 따라 장해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유기용제 중독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마련된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유기용제의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가. 이황화탄소로 인한 중독

CS_2 의 중독 원인은 이황화탄소의 흡입에 의해 발생되고 이에 따른 증상을 보면 조울증·환각등 정신적인 증상을 동반하는 뇌병증인 혼수상태를 유발하는 급성중독과 운동실조·운동속도의 감소·성격변화·하지의 강직성 마비 등의 신경증상을 나타내는 만성중독 증상이 있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

또한 기타 증상으로는 망막의 미세혈관류·난청 및 현훈·협심증·정자수의 감소·생리불순·유산 및 조산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만성중독증에는 특별한 치료방법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이황화탄소의 중독 증상에 따라 나타나는 그 병발증과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0ppm내외의 CS₂ 증기에 폭로되는 업무에 2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다음의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며 다만, 당뇨병·고혈압·혈관장해 등 CS₂ 외의 원인에 의한 질병을 제외한다.

(1) 망막의 미세혈관류·다발성뇌경색증·신장조직검사상 모세관간 사구체경화증 중 하나가 있는 경우

(2) 미세혈관류를 제외한 망막병변·다발성 말초신경병변·시신경염·관상동맥성심장질환·중추신경기능장애 또는 정신장애 중 2가지 이상이 있는 경우

(3) (2)의 장해 중 1가지가 있고, 신장장애·간장장애·조혈계장애·생식계장애·감각신경성난청·고혈압증 중 1가지 이상이 있는 경우

또한 20ppm 이상의 CS₂ 증기에 2주이상 폭로되고 있는 근로자에게 의식혼탁·쉼망·정신불안증 및 조울증과 같은 정신이상증세가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경우와 대량 또는 고농도의 CS₂ 증기에 폭로되어 의식장애 등의 급성중독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나. 트리클로로에틸렌으로 인한 중독

트리클로로에틸렌에 폭로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또는 그 업무를 떠난지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 다음의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 (1) 급성 또는 만성의 건조성·구열성 피부염
- (2) 결막염 또는 비염 등의 점막자극질환

(3) 뇌손상·간질·알코올이나 약물중독 및 동맥경화증 등에 의한 질환이 아닌 중추신경계장애

(4) 당뇨병·알코올·척추손상·납·비소·아크릴아미드·이황화탄소 등 다른 원인에 의한 질환이 아닌 말초신경장애

(5) 바이러스성간염·알코올성간염 등에 의한 질환이 아닌 간장장애

(6) 고혈압·당뇨 등 다른 원인에 의한 질환이 아닌 신장장애

또한 고농도의 트리클로로에틸렌에 폭로되어 의식장애·보행장애 등의 중추신경장애 또는 호흡기장애 등 기타의 급성중독 또는 그 속발증을 보이는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다. 지방족 및 방향족 화합물중 유기용제로 인한 중독

지방족 및 방향족 화합물중 유기용제인 톨루엔·크실렌·스티렌·사이클로헥산·노말헥산 등에 폭로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그 업무를 떠난 후 3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 다음의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 (1) 급성 또는 만성의 피부염
- (2) 결막염·각막염 또는 비염 등의 점막자극질환
- (3) 뇌손상·간질·알코올이나 약물중독 및 동맥경화증 등에 의한 질환을 제외한 중추신경계질환
- (4) 당뇨병·알코올·척추손상·납·비소·아크릴아미드·이황화탄소 등 다른 원인에 의한 질환을 제외한 말초신경계질환

- (5) 바이러스성간염 · 알코올성간염 등에 의한 질환을 제외한 간장장해
 (6) 고혈압 · 당뇨 등 다른 원인에 의한 질환을 제외한 신장장해

또한 고농도의 유기용제를 대량 흡입하여 의식 장해 · 경련 기타 급성중독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3. 업무상질병자의 산재보상

가. 요양급여

유기용제에 폭로되는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매년 특수건강 진단을 행하고, 직업병유소견자로 분류된 자는 요양신청을 하여 직업병이환자로 판명이 되면 근로복지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전국 3,015개소)에서 요양을 하게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기준 및 진료수가 기준에 의하여 요양비를 지급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유기용제에 의한 업무상질병이환자로 판정된 근로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95년도의 CS₂ 중독자는 179명(사망자 3명 포함)이고 트리클로로에틸렌 중독자 1명, 지방족 및 방향족 중독자는 8명이 있었다.

이들 직업병이환자가 일정기간 요양 후 치료를 종결하고 재발된 경우에는 언제든지 재요양을 받도록하고 있다.

나. 휴업급여

••

유기용제 취급 근로자는 건강진단결과
유소견자로 판정되면, 요양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직업병이환자로 판명이 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고, 정도에 따라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1인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급여의 기초인 평균임금은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된 날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제한 금액을 말하며 그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인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때에는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 동일한 근로자의 월급여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이를 평균임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다. 장해급여

근로자가 질병에 걸려 요양을 하였음에도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거나 또는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는 신체에 잔존하는 영구적인 - 장래에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로 인하여 생긴 노동력의 손실 또는 감소된 장해에 대하여 보상을 실시한다.

장해보상 기준은 부위별로 구분된 신체장해를 다시 생리학적 관점에서 24종의 계열로 세분하며 이를 다시 141개로 세분하고 장해상태를 노동능력의 상실정도에 따라 1급부터 14급까지 14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4. 보건관리자의 직무

가. 기본적 조치

우리의 건강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며 그 예방이 첫째일 것이다.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을 때에는 신체의 장해를 가져와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보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는 현상을 느꼈으며 실제로 유기용제에 중독되어 사망한 근로자만도 4명에 이르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사업주는 유해물질의 취급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유해한 작업에 있어서는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대체물의 사용, 작업방법 및 시설의 변경 또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작업장 관리

근로자를 상시 작업에 종사하도록 하는 옥내작업장에 대하여는 유해물질과의 접촉을 피할 수 있도록 바닥면적과 공간을 확보하여 기적 및 환기를 적합하게 하여야 함은 물론 식염과 음료수의 비치·작업장의 청결·오염된 바닥의 세척·오물의 처리등 유해장소에 대하여는 출입을 금지도록 하

● ●

**보건관리자로 직무수행시,
유기용제에 중독되지 않도록 작업을
지휘하고, 작업시설을 점검하며,
보호구 착용 상태를 확인하고,
빠짐없이 특수 건강진단을 받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

여 유해물질로 부터 보호하여 질병이 환을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다. 직무 수행시 유의점

사업장에 종사하는 보건관리자는 사업장을 수시로 순회하여 근로자의 육안적 건강상태나 작업환경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를 기록·관리하여 작업환경 개선에 노력하여야 함은 물론 근로자 건강관리에 적극 대처하여 신속한 요양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사업장에서 보건관리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첫째로 유기용제에 오염되지 않도록 작업방법을 결정한 후 작업을 지휘하고, 둘째는 옥내작업장·탱크 등 작업시설을 순회하여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며, 세번째 근로자가 작업시 송기마스크등 보호구의 착용상황을 감시하며 작업방법이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유기용제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빠짐없이 건강진단을 6월에 1회이상 받도록 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야 할 것이다.